##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(약칭: 스마트도시법)



[시행 2019. 4. 23.] [법률 제16388호, 2019. 4. 23., 일부개정]

국토교통부 (도시경제과) 044-201-3737, 3738, 4878, 4879

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, 관리·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 3. 21., 2018. 8. 14.>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 5. 22., 2017. 3. 21., 2018. 8. 14.>

- 1. "스마트도시"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・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・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.
- 1의2. "국가시범도시"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 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.
- 2. "스마트도시서비스"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・교통・복지・환경・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.
- 3. "스마트도시기반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  - 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
  - 나.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,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
  - 다.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  - 라.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,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 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4. "스마트도시기술"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·정보통신 융합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.
- 5. "건설・정보통신 융합기술"이란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・제어・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.
- 6. "스마트도시건설사업"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 시기반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6의2. "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"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.
- 7. "스마트도시산업"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,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.
- 8. "혁신성장진흥구역"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·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 대상)**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7. 3. 21., 2017. 12. 26., 2019. 4. 23.>

- 1. 「택지개발촉진법」의 택지개발사업
- 2. 「도시개발법」의 도시개발사업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의 혁신도시개발사업
- 4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의 기업도시개발사업
- 5. 「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
- 6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도시재생사업
- 7.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특별시·광역시·시·군의 도시정비·개량 등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② 이 법은 제1항의 사업 외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제1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건 설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7. 3. 21.>
- 제3조의2(국가 등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과 스마트도시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제3조의3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, 국가시범도시의 지정·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19. 4. 23.]

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<개정 2017. 3. 21.>

- 제4조(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·운영 등(이하 "스마트도시건설등"이라 한다)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3. 21., 2018. 8. 14.>
  - 1.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현황 및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
  - 2. 스마트도시의 이념과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 - 3. 스마트도시의 실현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  - 4.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
  - 5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  - 6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, 중앙행정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
  - 7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 운영과 관련 기준의 마련에 관한 사항
  - 8.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에 관한 사항
  - 9. 개인정보 보호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
  - 10.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 - 11.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
  - 12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안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(이하 "종합계획안"이라 한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의 국가정보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하되, 종합계획의 일관성 및 체계적 정합성(整合性)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<개정 2009. 5. 22., 2013. 3. 23., 2017. 3. 21.>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종합계획은 「국토기본법」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. [제목개정 2017. 3. 21.]
- 제5조(공청회의 개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  -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종합계획의 확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안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3. 21.>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, 시장 및 군수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종합계획을 송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3. 21.>
- **제7조(종합계획의 변경)**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8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다만,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 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7. 3. 21., 2018. 8. 14.>
  - 1.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
  - 2.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
  - 3.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
  - 4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
  - 5. 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
  - 6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  - 7.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
  - 8.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
  - 9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(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)
  - 10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립된 도시·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1. 4. 14., 2012. 5. 23., 2013. 3. 23., 2017. 3. 21.>
  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(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)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5. 23., 2017. 3. 21.>
  -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신설 2012. 5. 23., 2017. 3. 21.>
  - ⑤ 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기 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<개정 2011. 4. 14., 2012. 5. 23., 2017. 3. 21.>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⑥ 삭제<2015. 12. 29.>
- ⑦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.<개정 2012. 5. 23., 2015. 12. 29., 2017. 3. 21.> [제목개정 2017. 3. 21.]
- 제9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)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(이하 "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"라 한다)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,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7. 3. 21.>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- 제9조의2(민간부문의 제안)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기업 · 법인 ·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민간기업등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.
  - 1. 스마트도시건설사업
  - 2.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
  - 3.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
 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(이하 "민간제안사업"이라 한다)을 선정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, 제11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다.
  - ③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민간제안사업을 제안한 민간기업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민간기업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기업등에 대하여 제14조를 준용한다.
 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  - ⑤ 민간제안사업의 제안방식, 선정기준, 선정절차 및 비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9. 4. 23.]
- 제10조(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) ①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3. 3. 23., 2017. 3. 21.>
  - ②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7. 3. 21.>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제11조(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)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, 제9조 및 제 10조를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7. 3. 21.>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<개정 2017. 3. 21.>

- 제12조(사업시행자)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5. 12. 29., 2017. 2. 8., 2017. 3. 21., 2019. 4. 23.>
  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, 그 밖에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
- 4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6조,「도시개발법」제11조,「택지개발촉진법」제7조,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17조부터 제19조까지,「기업도 시개발 특별법」제10조,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5조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 업시행자
- 5.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
- 6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, 2019. 4. 23.>
-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.<신설 2017. 3. 21.>
- 1.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건설업자
- 2. 「전기공사업법」에 따른 전기공사업자
- 3. 「전기통신사업법」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
- 4. 「정보통신공사업법」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
- 5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
- 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

## 제13조 삭제 <2015. 12. 29.>

제14조(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)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(이하 "실시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7. 3. 21.>

- 1. 사업의 명칭 및 범위
- 2.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
- 3. 사업시행자
- 4. 사업의 시행기간
- 5. 사업의 시행방법
- 6.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(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)
- 7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
- 8.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
- 9.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
- 10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, 둘 이상의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, 이하 이 조 및 제 15조, 제16조에서 "실시계획승인권자"라 한다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2. 5. 23., 2013. 3. 23.>
- ③ 국토교통부장관(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)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3. 3. 23.>
- ④ 국토교통부장관(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)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 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 에 공고하여야 하며,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.<개정 2012. 5. 23., 2013. 3, 23.>
-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- 제15조(다른 법률에 따른 인・허가등의 의제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・허가・인가 또는 결정 등(이 하 "인・허가등"이라 한다)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・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,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・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. <개정 2008. 12. 26., 2009. 6. 9., 2010. 5. 31., 2011. 4. 14., 2011. 8. 4., 2014. 1. 14., 2016. 12. 27., 2017. 1. 17., 2017. 8. 9., 2017. 11. 28.>
  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(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),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
  - 2. 「하수도법」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
  - 3. 「하천법」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
  - 4. 「소하천정비법」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
  - 5. 「도로법」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
  - 6. 「도로교통법」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
  - 7. 「건축법」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,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·신고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의 축조신고
  - 8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
  - 9. 「국유재산법」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
  - 10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・수익허가
  - 11. 「농지법」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,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
  - 12. 「농어촌정비법」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
  - 13.「산지관리법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
  - 14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, 「산림보호법」제9조제 1항 및 제2항제1호・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(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)에서의 행위의 허가・신고
  - 15. 「사방사업법」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
  - 16. 「초지법」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
  - 17.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
  - 18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
  - 19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,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
  - 20. 「토양환경보전법」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
  - 21. 「대기환경보전법」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
  - 22. 「물환경보전법」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3. 「소음・진동관리법」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
- ② 인·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(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(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)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- **제16조(준공검사)** ① 사업시행자(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)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  -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21.>
  -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·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·인가·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.<개정 2017. 3, 21.>
 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실시계획승인 등의 특례) ①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내용을 포함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해당 법률에 따라 수립하여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2. 29.>
  -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. [제목개정 2015. 12. 29.]
- 제18조(공공시설의 귀속)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이를 공공시설로 보며, 그 귀속에 관하여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5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  -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. 다만,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.<개정 2012. 5. 23.>
  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9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반시설의 관리청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로 한다. <개정 2012. 5. 23., 2017. 3. 21.>
  -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과 관계되는 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관리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>
  - 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전문인력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>
  - ④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 3. 21.>
 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계획을 스마트도 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>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>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<신설 2012. 5. 23., 2017. 3. 21.>

- 제19조의2(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・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7. 3. 21.>
  -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>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[본조신설 2012. 5. 23.]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- 제19조의3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3. 21.>

[본조신설 2012. 5. 23.]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- 제19조의4(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을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(이하 "지원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3. 21.>
  -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7. 3. 21.>
  - 1.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및 유통현황의 조사・분석
  - 2. 스마트도시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
  - 3.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・개발
  - 4. 스마트도시의 표준화 지원
  - 5.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
  - 6.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수출 지원
  - 7. 스마트도시 인증 지원
  - 8. 스마트도시서비스 이용실태 조사・분석
  - 9. 그 밖에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홍보, 정책의 발굴 및 제도 개선 지원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.<개정 2013. 3. 23.>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  - 2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3.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- 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2. 5. 23.] [제목개정 2017. 3. 21.]

- 제19조의5(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·통합 등)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시설(이하 이 조에서 "스마트도시 관리·운영시설"이라 한다)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②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·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· 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·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·통합 사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<개정 2017. 3. 21.>

- 제20조(융합기술의 기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건설·정보통신 융합기술(이하 "융합기술"이라 한다)의 기준을 제정·고시할 수 있다. 다만,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기술 중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준을 따라야 하고, 융합기술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표준을 따라야 하며, 다른 법률에서 융합기술 중 교통관련 기술의 표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>
  - ② 제1항에 따라 융합기술의 기준을 제정할 때에는 스마트도시 간의 호환성과 융합기술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<개정 2017. 3. 21.>
- 제21조(개인정보 보호)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, 이용, 제공, 보유, 관리 및 파기(이하 "취급"이라 한다)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. <개정 2017. 3. 21.>
- 제22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제8조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3. 21., 2017. 7. 26.>
  - ②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민간사업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「정보통신 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을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> [제목개정 2017. 3. 21.]

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<개정 2017. 3. 21.>

- **제23조(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)**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5. 12. 29., 2017. 3. 21., 2018. 8. 14.>
  - 1.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
  - 2. 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
  - 3.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
  - 4.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

- 5. 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 통합에 관한 사항
- 6.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
- 7.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
- 8. 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9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2. 5. 23.>
- ③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,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<개정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5. 12. 29., 2017. 3. 21., 2017. 7. 26.>
- 1. 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
-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.<신설 2015. 12. 29., 2017. 3. 21.>
-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5. 12. 29.>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- 제23조의2(국가시범도시지원단) ①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・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・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(이하 "지원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  - 1.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・운영・개발
  - 2.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  -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제24조(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)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 ·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2. 29,, 2017. 3. 21.>

- 1.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
- 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- 3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2. 5. 23., 2017. 3. 21.>
- 1.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
- 2.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
- 3. 사업시행자
- 4.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
- 5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
- 6.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
-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제24조의2(스마트도시협회) ① 스마트도시사업자 등은 스마트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

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-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스마트도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・분석
- 2. 스마트도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제도 개선 건의
- 3. 스마트도시에 관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자에 대한 교육훈련
- 5. 스마트도시의 기술에 관한 각종 자문
- 6. 스마트도시의 실적확인 지원에 관한 업무
- 7.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8.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④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- 제24조의3(지도·감독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시행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,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출입·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<신설 2017. 3. 21.>

- 제25조(스마트도시산업 육성·지원 시책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·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.
  - 1.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
  - 2. 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
  - 3.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
  - 4. 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
  - 5. 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
  - 6.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[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<2017. 3. 21.>]

- 제26조(보조 또는 융자)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>

[제25조에서 이동,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<2017. 3. 21.>]

- 제27조(연구·개발 등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·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3. 21.>
  - 1.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・개발 및 이전・보급

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산업계・학계・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・개발
- 3. 삭제 < 2017. 3. 21.>
- 4.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

[제26조에서 이동,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<2017. 3. 21.>]

제28조(전문인력의 양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, 관리·운영,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<개정 2017. 3. 21.>

- 1.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
- 2.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개정 2017. 3. 21.>

[제27조에서 이동,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<2017. 3. 21.>]

- 제29조(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조성, 관리·운영,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7. 3. 21.>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13. 3. 23., 2017. 3. 21.>

[제목개정 2017. 3. 21.]

[제28조에서 이동 <2017. 3. 21.>]

- 제30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 ① 국가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는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과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에 따른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으로 해외 스마트도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- 제31조(금융지원 등) ① 「신용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「기술보증기금법」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 기금은 스마트도시사업에 보증한도,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사업 등에 대하여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- **제32조(스마트도시 등의 인증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.
  - 1. 스마트도시
  - 2. 스마트도시기반시설
  - 3.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
 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제33조(인증의 취소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- 2.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- **제34조(인증의 표시 등)**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, 스마트도시기반시설,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(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
  - ②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- 제34조의2(권한 및 업무의 위임・위탁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・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4. 23.]

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• 지원 등 <신설 2018. 8. 14.>

- 제35조(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,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 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"이라 한다)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
  - 2.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
  - 3.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
 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.
  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.
  -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,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, 제3항,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·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⑦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

## [종전 제35조는 제47조로 이동 <2018. 8. 14.>]

- **제35조의2(총괄계획가의 운영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.
  - 1.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
  - 2.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 관리에 대한 지원
  - 3.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
  - ②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, 업무 범위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9. 4. 23.]

- **제36조(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·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신설 2019. 4. 23.>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<개정 2019. 4. 23.>
  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19. 4. 23.>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제37조(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)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 치단체의 장,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,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집된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- 제38조(국가시범도시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특례) ① 국가시범도시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시행자는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모할 수 있다.
  -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·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제39조(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)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・개발 목적으로「자동차관리법」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「도로교통법」제49조제1항제10호・제11호・제11호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제40조(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)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·개발 또는 치안·안보·안전의 목적으로「항공안전법」제 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**제41조(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 기관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제2조제

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

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라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제2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 간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본문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1.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
- 2.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)
-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입찰 참여 제한의 기준・방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- 제42조(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에 관한 특례) ① 국가기관등이「전기통신사업법」제2조제5호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국가시범도시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 중 비영리목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- 제42조의2(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에 관한 특례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, 지형, 시설물을 활용하여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・이용・보급 촉진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・관리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4. 23.]

제42조의3(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) 국가시범도시에서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무인 예약・배치 시스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9. 4. 23.]

- 제43조(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시범도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혁신성장진흥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·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,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. 이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그 밖에 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, 지정·변경·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[본조신설 2018. 8. 14.]
- 제44조(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)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0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 <개정 2019. 4. 23.>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0조의2제8항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<신설 2019. 4. 23.>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제45조(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)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5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- **제46조(창업지원시설 등의 건축 등)** 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혁신성장진흥구역에서 창업 및 혁신성장의 지원을 목적으로 창업지원시설 등 공공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을 건축・임대・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건축·임대·운영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, 건축·임대·운영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8. 14.]

제8장 벌칙 <신설 2018. 8. 14.>

제4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.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, 자료제출,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・방해・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
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
- 3.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 한다.

[본조신설 2017. 3. 21.]

[제35조에서 이동 <2018. 8. 14.>]

- 제48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  - 1. 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
  - 2.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
  - 3. 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

[본조신설 2019. 4. 23.]

**부칙** <제16388호,2019. 4. 23.>

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, 제9조의2,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, 제3조의3,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